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79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윤한홍·박덕흠·서일준

김성원 • 권성동 • 박형수

윤영석 • 박수민 • 최수진

김상훈 · 엄태영 · 김석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 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 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0호) 및「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도"를 "제3항에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4에 따른 주택대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있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4(주택대부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에게 장기 저리(長期低利)로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 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 ③ 주택대부의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주택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 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부동산이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권리의 보호) ① (생	제6조의2(권리의 보호) ①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의4에 따른 주택대부,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
	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u>법률」 제55조, 「5·18민주유</u>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
	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담보
	로 제공할 수 있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u>제2항에도</u> 불구하	<u>④</u> <u>제3항에도</u>
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	
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	
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을 압류할 수 있다.	
<u><신 설></u>	제12조의4(주택대부 지원) ① 국

- 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에 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 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으로 한다.
- ③ 주택대부의 한도액・이율・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④ 주택대부의 신청·담보 등 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

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